

작성방법

이 명세서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9조의2제7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,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합니다.

- "① 상호(법인명)"란부터 "⑦ 사업장 소재지"란까지: 관광숙박시설 사업자의 기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.
- "⑧ 상호(법인명)"란부터 "⑪ 전화번호"란까지: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기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.
- "⑫ 건수"란부터 "⑮ 환급액"란까지: ⑤거래기간의 환급 실적 합계를 적습니다.
- "⑯ 숙박용역 일련번호"란: 숙박용역 공급 시 발행한 '숙박용역공급확인서' 상 일련번호(전표번호)를 적습니다.
- "⑰ 공급일자"란: 숙박용역 공급이 종료된 날이며, '숙박용역공급확인서' 상 숙박용역 공급일(연월일)을 적습니다.
- "⑱ 환급일자"란: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연월일을 적습니다.
- "⑲ 환급증명서를 송부 받은 일자"란: 환급증명서를 송부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.
- "⑳ 금액"란: 숙박용역 일련번호별 공급금액(세금포함), 부가가치세, 환급액을 적습니다. 공급금액(세금포함)은 '숙박용역공급확인서'에 기재된 공급가격(세금포함)을 적습니다.
- "㉑ 투숙객"란: 투숙객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
